

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0-126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20. 11. 26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다양한 활동조직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치법규 입안원칙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(조례 전반)

나. 마을만들기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(안 제20조)

- 1) 현행) 지원센터 위탁
- 2) 신설) 마을만들기 업무 위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9조·제22조·제10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나. 예산조치: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0백만원 확보 예정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0. 10. 30.~11. 19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붙임
- 4) 성별영향평가: 반영함(안 제11조제1항)

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”를 “다음과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“군”을 “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군수”를 “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5조 조 제목 “(다른 법령 등과 관계)”를 “(다른 조례와 관계)”로 하고 같은 조 중 “다른 법령이나”를 “다른”으로 “조례로”를 “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7조 조 제목 “(마을만들기 사업)”을 “(사업 및 지원)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.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주체에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추진주체가”를 “추진주체가 제7조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련 실과소장”을 “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위탁 운영)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주민”이란 <u>군에</u> 주소를 두거나, <u>군에</u>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~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주민”이란 <u>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</u>에 주소를 두거나, <u>군에</u>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책무) ① <u>군수는</u>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책무) ① <u>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는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(다른 법령 등과 관계)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<u>다른 법령이나 조례에</u>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로</u>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5조(다른 조례와 관계)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<u>다른 조례에</u>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<u>조례에서</u>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<p>제7조(마을만들기 사업) <u>군수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. 이 경우,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</p> <p>2. 문화·복지 활성화 사업</p> <p>3. 귀농·귀촌 활성화 사업</p> <p>4.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</p> <p>5.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</p> <p>6.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</p>	<p>제7조(사업 및 지원) ① <u>군수는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추진한다.</p> <p>1. 로컬푸드 순환기능 강화 사업</p> <p>2. 문화·복지 활성화 사업</p> <p>3. 귀농·귀촌 활성화 사업</p> <p>4. 마을개발 활성화 사업</p> <p>5.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</p> <p>6.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</p>

<신 설>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주체에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신청 등) ① 추진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 소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,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④~⑤ (생략)

제16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지원센터의 위탁)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

제8조(지원신청 등) ① 추진주체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, 전문가 및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④~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20조(위탁 운영) 군수는 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능력이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거창군 맞춤형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: 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비용
- 나. 관련 조문: 제20조(위탁 운영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군비	120	120	120	0	0	360

- ### 3. 관련 의견: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근거 마련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민간위탁 비용: 120백만원

작성자: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